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107616 소유권말소등기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H

8. I

9. J

10. K

변 론 종 결 2020. 9. 10.

판 결 선 고 2020. 10. 8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주 문

1. 원고에게 [redacted]시 L 임야 992㎡ 중,

가. 피고 C는 448/1,400 지분, 피고 I, J, K는 각 28/1,400 지분, 피고 F은 117/1,400 지분, 피고 D은 113/1,400 지분, 피고 E은 78/1,400 지분에 관하여 각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02. 4. 4. 접수 제3680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B은 4/4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. 4. 11. 접수 제46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다. 피고 G은 12/4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. 4. 6. 접수 제33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라. 피고 [redacted]시는 위 가.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[redacted]시 M 전 363평(이하 '이 사건 제1 토지'라 한다)은 6·25사변 당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, 1954. 1. 20. N이 이에 관하여 [redacted]법원 [redacted]등기소 일자불상 접수의 1946. 3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고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이후 1958. 2. 12.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.

나.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제1 토지와 동일한 위치의 [redacted]시 L 임야 992㎡(이하 '이 사건 제2 토지'라 한다)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1990. 11. 29.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었으나, 이후 2020. 4. 4. 이 사건 제2 토지 중 O, 피고 I, J는 각 4/40 지분, 피고 C는 12/40 지분, 피고 K는 8/40 지분, 피고 F, D은 각 3/40 지분, 피고 E은 2/40 지분에 관하여 각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또한 이 사건 제2 토지 중, P는 2005. 11. 7. 피고 J의 4/40 지분에 관하여 2005. 11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피고 B은 2006. 4. 11. 피고 I의 4/40 지분에 관하여 2005. 12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, 피고 G은 2011. 4. 6. 피고 K의 8/40 지분 및 P의 4/40 지분에 관하여 2011. 4. 1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각 마쳤다.

라. [redacted]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, 2018. 3. 27. 피고 F의 3/40 지분을 압류하여 2018. 3. 28.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, 2018. 3. 28. 피고 D의 3/40 지분 및 피고 E의 2/40 지분을 각 압류하여 2018. 4. 3. 그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한편, O은 2006. 8. 6. 사망하여, 그의 자녀들인 피고 C, I, J, K 및 1982. 2. 28. 사망한 Q의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D, E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, N도 1990. 2. 11.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 등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[인정근거] 피고 B, C, G, I, J, K :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, 피고 D, E, F, [redacted]시 :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 등의 공유이고, 이와 중복하여 등록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원인무효이며,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1, 2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,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,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지분과 별지 지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분으로서 피고 C는 448/1,400 지분, 피고 I, J, K는 각 28/1,400 지분, 피고 F은 117/1,400 지분, 피고 D은 113/1,400 지분, 피고 E은 78/1,4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, 피고 B은 4/4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G은 12/4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[redacted]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09

지분내역표

등기목적	소유자/지분	소유권변동과정 및 상속관계	상속지분	최종지분
	4/40 (사망)	상속자 (자) 7/350, (자) 7/350, (자) 7/350, (자) 7/350, (자) 7/350 (사망) 대습상속자 (배우자) 3/350, (자) 2/350, (자) 2/350		
소유권보존	12/40		의 상속지분 7/350	12/40 + 7/350 = 4480(=4200+280)/14000 = 448/1400
	4/40	매매 → 4/40	의 상속지분 7/350	7/350 = 28/1400
	4/40	매매 → 4/40 → 경매 → 4/40	의 상속지분 7/350	7/350 = 28/1400
	8/40	경매 → 8/40	의 상속지분 7/350	7/350 = 28/1400
	3/40		의 상속지분 3/350	3/40 + 3/520 = 1170(=1050+120)/14000 = 117/1400
	3/40		의 상속지분 2/350	3/40 + 2/520 = 1130(=1050+80)/14000 = 113/1400
	2/40		의 상속지분 2/350	2/40 + 2/520 = 780(=700+80)/14000 = 78/1400
소유권이전	4/40	지분 전부이전 4/40 → 4/40		없음
소유권이전	4/40	지분 전부이전 4/40		4/40 = 140/1400
소유권이전	12/40	지분 8/40, 지분 4/40		12/40 = 420/1400